posco
포스코퓨처엠

세무관리 정책
(Tax Management Policy)

최종 수정일	'25. 12. 01.	최초 제정일	’23. 04. 28
Rev.	2	표준번호	-
담당부서	세무섹션		
검토자	회계세무그룹장		
승인자	대표이사 사장		

목적

본 정책은 포스코퓨처엠이 준수해야 할 조세 정책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서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조세법령을 준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적용범위

본 정책은 포스코퓨처엠 및 그 임직원에게 적용된다. 포스코퓨처엠 전 사업장, 출자법인 및 그 임직원과 포스코퓨처엠과 거래하는 협력사 및 계약사에게도 본 정책 또는 본 정책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준수할 것을 권장한다.

기본원칙

1. **조세 법령 준수**

   포스코퓨처엠은 대한민국 및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국가의 세법과 그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원칙을 준수하여 정확하게 납부할 세액 산정 및 적기 납부 등 각 국가에서 부여되는 납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2. 과세당국과의 투명한 상호협력적 관계 구축

포스코퓨처엠은 각 국가의 과세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구축하고, 책임을 다하는 납세자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조세신고 및 납세의무를 성실히 임하며, 제도 및 유관 규정·절차의 발전적 개정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과세당국과 건설적이고 상호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3. 국제 거래상 의무 이행

포스코퓨처엠은 국제 거래상의 세무법규를 준수하고, 납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며, 조세를 부당하게 경감하거나 상업적 실질이 없는 조세 회피 거래 및 조세피난처 등 저세율 국가로의 소득이전행위를 하지 않는다. 또한, 계열사간 거래를 함에 있어 이전가격 이슈가 발생하지 않도록 독립기업 원칙(Arm's length principle) 및 OECD TP Guideline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식'에 근거하여 이전가격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한다.

4. 지역사회 발전 기여

포스코퓨처엠은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철저한 세무관리를 통해 불합리한 과세는 경정청구 및 행정소송 등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조세불복을 진행한다. 또한 합법적 절세재원에 따른 성장이익을 사회와 공유한다.

실행방안

1. 조세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구축

대내·외 경영환경, 사업 구조 및 거래 분석을 모니터링하는 사내 세무 전담부서를 운영하여 조세 리스크를 사전에 검토하고, 리스크 평가검토에 기반하여 의사 결정을 한다. 모든 세무신고 납부기한을 준수하며, 조세와 관련된 자료를 문서화하여 보관한다.

2. 이사회 및 세무담당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

이사회는 본 정책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주체가 되며, 세무담당 임직원은 포스코퓨처엠의 세무 정책에 따라 각 국가의 세무 법규를 준수하고, 과세 당국과 투명한 관계를 유지하는 원칙 아래 업무를 수행한다.

3. 외부 전문기관 활용

조세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기관의 객관적인 검토를 받고, 중요한 의사결정 시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조세 리스크를 최소화 한다.

4. 투명한 정보 공개

대한민국 및 사업의 영위하고 있는 국가에서 납부하고 있는 세금 납부액을 투명하게 공개 한다.